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설계년월 : 2022. 10.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금이억사천만원정(금240,0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철 도 건 설 과

I. 설계설명서

- 과업명** :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의 목적** :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과업의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전 호남선(가수원~논산) 29.2km
-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마.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하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및 평가
-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 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서류 작성

파. 종합평가 및 결론

3. 세부과업내용

- 가.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요약문
-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 다.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2개 이상의 대안 설정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
 -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 마)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바) 취·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사) 하수종말·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자)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차)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카)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타)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

2)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대상지역의 설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라)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마) 대안의 설정

바)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사)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바.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
되었는지 제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1)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2)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
빈도 등)

(3)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4)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5)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
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2)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

(3)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

(4)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
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철도,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하며, 지역별 환경
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철도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3개월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

(1)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2)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3)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

4)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수질 현황

(가)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나)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다)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2) 수문 현황

(가)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나)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 수자원 이용상황

(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4) 주요 오염원 상황

(가)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5)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한 조사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2)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3)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6) 토양

가) 사업의 실시예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 (1)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2)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3)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4)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1) 식물상과 식생
 - (가)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나)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다)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라)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마) 식생보전등급
- (2) 육상동물
 - (가)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나)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1) 수생식물군집
 - (가) 종 조성, 종 다양도
 - (나)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
 - (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 상황을 현존식생도로 표현

(2)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가)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 작성
- (나)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

(4) 어획대상 동물

- (가)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나)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 (5)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가)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해양 동·식물상

- (1)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동물, 해양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법정보호종 등
- (2) 현황조사 및 분석
 - (가) 사업시행 전·후 해양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대책 수립
 - (나) 해양환경 현황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라) 유의사항

- (1)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 실시
- (2)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

9) 친환경적 자원순환

-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결정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2)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다)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0)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 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소 음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2) 진 동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다)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라)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라) 소음진동 모델링

(1) 현재 기본계획 협의중인 구간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

(2) 소음·진동 예측을 위한 유사 소음·진동원의 소음·진동 측정

(3)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소음·진동 예측을 위해 소음·진동모델링을 실시하여 소음·진동분석 및 기준 적합 유무를 판단

(4) 소음·진동 현황 조사 및 소음·진동모델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제출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안전

- 가.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나.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대책

- 가.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라.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을”의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들을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

- 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자. 성과품 외 과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하며, 필요가 없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회수 후 파기대책에 따라 파기한다.
- 차.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등을 작성 할 수 있다.
- 카.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파.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하.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거.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표 준 공 정						비 고
	60	120	180	240	300	360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현황조사 (환경질,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분	표 준 공 정						비 고
	60	120	180	240	300	360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현황조사 (환경질,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